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7. 11.

종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6월 2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6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46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 ('97. 7. 1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홍 기

가. 개정이유

요보호 여성보호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변경및 임용 자격기준 변경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부녀복지상담원의 직명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
-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중 '부녀복지상담원' 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고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95. 1. 5. 전문개정되어 '96. 1.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윤락행위방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과 제1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녀복지상담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임용자격기준은 '96. 8. 28 서울시로 부터 각 자치구로 통보된 별정직공무원 정원조정 통보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을 마포구 실정에 맞게 여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서울시의 자치구 정원조정 통보

에 의하면 우리구는 7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만 정원이 조정되었으나 추후 재조정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8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에 관한 규정은 존속시키고 8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은 동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종열 위원) : 지금 우리구에는 여성복지상담원 7급 1명이 있는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현재 8급이 1명 있는데 7급으로 조정됨으로서 앞으로는 7급으로 둘수 있음.
- 질의요지(김종열 위원) : 그러면 여성복지상담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급수만 8급에서 7급으로 조정되는 것임.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여성복지상담원이 8급에서 7급으로 곧바로 승진할 수 있는 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있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서울시 각구 여성복지상담원 조정인원표를 보면 대부분의 구가 1명인데 2명인 구도 있는바, 구마다 정원이 다른 이유는?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아직 파악을 못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일자 : 1997. 6.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요보호 여성보호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변경 및 임용자격기준 변경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부녀복지상담원의 직명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
-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 중“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고 임용자격기준을 개정<별표 1>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3호)제15조
- 지방공무원법(1996.12.30 법률제5,207호)제2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규정(1997. 2. 4대통령령 제15,267호) 제16조
- 윤락행위등 방지법 (1995. 1. 5 법률 제4,011호)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증치 : 불필요

-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심·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중 "직명(위) 및 업무구분" 을 "직명" 으로 하고, 동표중 제2호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중 부녀복지상담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명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기 준
여성복지 상 담 원 (부녀상담원)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녀상담처리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 지도 및 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여자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일반상단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여자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 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가정문제상담, 지도 및 계몽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 복지상담 기타 선도보호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자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3년 이상 경력자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8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 인자.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② (부녀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복지 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1. (생략)				
직명(위)및 업무구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구청가정 복지과장	(생략)			
부녀복지 상담원	6급상당 (수석상담원)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일반상담원(7급상당) 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여자	1991.9.9 보건사회부 예규 제600호
	7급상당 '일반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생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예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인 여자 2. 사회복지사 2급 1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 3. 일반상담원(8급상당) 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여자	

개정안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1. (현행과 같음)				
직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				
직명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구청가정 복지과장	(현행과 같음)			
여성복지 상담원 (부녀 상담원)	6급상당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 담원)7급상당으로근무 한 경력이3년이상인 여자	
	7급상당	(현행과 같음)	1. 4년제대학 사회사업학 과를 졸업한 여자 2. 초·중·고등학교 교사 경력이 3년이상인 여자 3.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 담원) 8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여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거	직 명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거
	8급상당 (일반상담원 윤락여성 상 담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u> · <u>가정문제상담, 지도 및 계몽</u> · <u>모자가정의 보호</u>와 <u>모자복지상담</u> · <u>기타 선도보호</u>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u> 에 근무한 경력이 <u>5년이상인 여자</u> 2. <u>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u> 을 소지한 여자			<삭 제>			
가정복지 상 담 원		(생 략)			가정복지 상 담 원		(현행과같음)		
아동복지 지 도 원 (청소년지도원)		(생 략)			아동복지 지 도 원 (청소년지도원)		(현행과같음)		
훈련교사		(생 략)			훈련교사		(현행과같음)		
3.~8.(생 략)					3.~8.(현행과같음)				
직명(위)및 업무구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직 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 음)